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46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남인순 · 최보윤 · 권칠승
허종식 · 서영교 · 민병덕
이정문 · 안태준 · 문진석
전현희 · 김문수 · 조정식
이수진 · 조승래 · 박정현
김 윤 · 장종태 · 최혁진
허성무 · 최형두 · 한창민
장철민 · 김선민 · 서미화
위성곤 · 황운하 · 김원이
전종덕 · 이원택 · 황정아
서영석 · 김영진 · 박주민
김남희 의원(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
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
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조의2 및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u>지도 아래</u>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3. (생 략)	제1조의2(정의) ----- -----. 1. ----- ----- <u>지도 또는 처방 · 의뢰에 따라</u> ----- -----. 2. 3. (현행과 같음)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 · 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u>